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0. 3. 12(목) 10:00

제2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
관한 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75호
- 나. 제 출 자 : 강수정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0. 3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3. 2.

2. 제안이유

장애인의 차별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다. 교육·홍보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- 라.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마.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신고 규정(안 제8조)
- 바.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(1)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 - (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8조, 제9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0. 3. 2. ~ 3. 9.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
-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와 시책, 추진방안 등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밑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며
- 안 제6조~ 제7조에서는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와 장애인 인권 현황을 현실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였으며
-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 규정을 제정하여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 조치를 도모하였으며
- 안 제10조에서는 금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, 그 기능을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됨

다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도적 필요 사항과 시책과 사업 등을 마련하였으며
-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장애인복지법

[시행 2019. 12. 12.] [법률 제15904호, 2018. 12. 11., 일부개정]

제8조(차별금지 등)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,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·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8. 6. 20.] [법률 제15272호, 2017. 12. 19., 일부개정]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